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026호
- 나. 제안자 : 최기찬 의원 외 15명
- 다. 제안일 : 2024. 8. 12.
- 라. 회부일 : 2024. 8. 14.

2.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으로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이처럼 서울시 인구정책에서도 중요해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 및 문화, 제도 등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임
-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언어, 문화, 사회제도 등을 이해·학습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명시

(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안 제7조제5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4.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글로벌도시정책관) : 원안 가결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게 실시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u>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u></p> <p><신설></p> <p>3. ~ 11. (생략)</p> <p>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신설></p> <p>3. <u>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u></p> <p>4. ~ 11. (생략)</p> <p>③·④ (생략)</p> <p><신설></p>	<p>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정보 제공 -----</p> <p>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사회·문화 이해 교육</p> <p>4. ~ 12. (현행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p> <p>4. -----대한 ----- -----</p> <p>5. ~ 12.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p>

나. 검토 내용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¹⁾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²⁾를 각각 제정·운영 중이었으나 외국인주민 관련 서비스의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 개선 등을 위해 양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³⁾한 바 있음
- 현행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민으로서의 지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 내용 및 범위, ▲자녀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집중 거주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의 시책사업,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지원 근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글로벌센터’와 15개소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에서 생활정보의 다국어 번역·제공,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커뮤니티 행사 지원, 심리·진학·법률·노무 상담,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고, 2개소의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7개소의 ‘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붙임1 참조)
- 서울시는 2024년 5월 ‘우수 외국인인재 유치’,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⁴⁾을 발

1) 2007. 12. 26. 제정, 2014. 7. 17. 폐지

2) 2009. 5. 28. 제정, 2014. 7. 17. 폐지

3) 2014. 7. 17. 제정

4)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표하였음.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서울형 실용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과 서울형 실용한국어 과정 수료자에 대한 특정 비자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 추천 쿼터 우선 추천 등의 혜택부여를 구상한 바 있음

〈 ‘서울형 실용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안 〉

全 센터 동일 기본과정 운영	맞춤형 특별 과정	서울시 수료증 발급
기본과정 (생활한국어, 한국문화, TOPIK) + 서울시 온라인세종학당 무료운영	권역별 특별과정 (중도입국자녀, 취업한국어, 비즈니스어, 산업안전, 국적취득)	교육시간 80% 이수후 평가 통과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우수자 시상) ※ E-7-4 전환시 우선 추천(지자체 쿼터)

출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 2024.5.

“주요 조문별 검토”

①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구체화(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안 같은 조 제2항제3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을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3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신 설> 3. ~ 11. (생 략)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정보제공 -----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4. ~ 12. (현행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며,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5년간(‘24~’28) 2,506억원을 투입해 ‘우수 외국인인재 유치’,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를 핵심으로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2 참조)

현행	개정안
와 같다. 1. ~ 2. (생략) <u><신설></u>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 11.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4. ----- 대한 ----- 5. ~ 12.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에서 구상된 ‘서울형 실용한국어 교육과정’ 등의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행 조례에서도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를 분리하는 것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언어교육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그 실행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②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7조제5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 또는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신 설>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에서 시장이 지정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특정 비자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 추천 쿼터로 우선 추천 하는 등의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붙임 2 참조)
- 중앙정부(법무부)도 정부가 지정한 대학, 공공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귀화 및 영주자격 신청 시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⁵⁾하고 있음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 정착에 필수적인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을 정책 대상별로 분리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정책 체계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통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또한, 외국인 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참여도 및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하겠음

5)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https://www.moj.go.kr/moj/369/subview.do>)

▶ 이수혜택 :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 플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붙임 1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시설 현황**

연번	부서	시설명	위 치	비고		
1	외국인이민 담당관	서울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38			
2	다문 담화 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영등포구 도신로 40			
3		외국인 노동자 센터	성 동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4			성 북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5			은 평	은평구 은평로 21길 14-26		
6			양 천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7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29		
8			강 동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9			글로벌 빌리지 센터	이 태 원	용산구 이태원로 27가길 54-14, 지층	
10				이 촌	용산구 이촌로 224, 3층	
11		성 북		성북구 성북로 134, 1층		
12		연 남		마포구 동교로 219, 3층		
13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16 3층		
14		서 래		서초구 서래로 28, 3층		
15		강 남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문화센터 5층		
16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영등포구 문래로 164 5층		
17		이주여성 가정폭력상담소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	종구 마른내로 146, 7층		
18			남서울이주여성 상담소	동작구 양녕로 27길 23, 2층		
19		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마리이주여성쉼터	용산구 (비공개시설)	쉼터	
20			서울이주여성쉼터	성북구 (비공개시설)	쉼터	
21			벗들의집	성북구 (비공개시설)	쉼터	
22			행복이주여성쉼터	은평구 (비공개시설)	쉼터	
23			마리공동체	용산구 (비공개시설)	그룹홈	
24			사랑의집	마포구 (비공개시설)	그룹홈	
25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시흥동 산 139-2	자활지원	

* 가정폭력보호시설 비공개 근거 :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의2
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운영지침

비전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

정책
목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인재 도시**
다양성이 공존하고 존중받는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

분야
(4대)

우수인재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 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 외국인 상호 존중
및 소통 강화

핵심
과제
(20개)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치 **신규**

준전문인력
취업학교 운영 **신규**

온·오프라인
원스톱 지원 **신규**

세계인 축제
및 주간 운영 **신규**

100대
타깃 기업 유치 **신규**

SW·K뷰티 등
맞춤 인력 육성 **신규**

AI 활용 배리어 프리
구축 **신규**

웰컴키트 및
서포터즈단 운영 **신규**

해외 스타트업
인재 유치 **신규**

돌봄분야
외국인력 확충 **신규**

임신출산돌봄 서비스
강화 **확대**

체육·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우수인재(유학생)
성장 지원 **신규**

비경쟁 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신규**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확대**

사회 참여
활동 지원 **확대**

첨단산업분야
취·창업 지원 **확대**

맞춤형 취·창업
지원 **확대**

외국인 친화
생활환경 조성 **확대**

문화다양성 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추진
체계

서울시 + 자치구 + 서울글로벌센터 + 가족센터(26) + 외국인주민지원센터(2)
외국인노동자센터(5) +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 서울여성가족재단 + 서울연구원

